

웅지세무대학교	졸업준비위원회규정	문서번호	6-3-10(E)-0
		제정일자	04.03.01
		최근개정	15.04.01
		주관부서	학생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졸업에 관한 준비를 학칙을 바탕으로 하여 자치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위원회 설치)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웅지세무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 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각 학과 2학년 중 대의원 및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한다. <개정 2007.01.01.>

제4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은에 관한 사항
2. 졸업기념품에 관한 사항
3.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
4. 기타 졸업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임원)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임명하고, 부위원장, 총무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 <개정 2007.01.01., 2015.04.01.>

제6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재학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의결)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 위원회의 재정은 졸업준비금으로 한다.

제9조(금지사항)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들을 위반 시는 학칙 및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
1. 학생신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
2.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앨범제작자 선정에 있어서 금품수수 행위
3. 학교명예 및 학생전체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04.03.01.>

이 규정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07.01.01.>

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/시행 2015.04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5조 "학생처장"을 "교학처장"으로 개정하다